



제 437회 국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정일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755호)

2026. 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 목 차

|                                        |   |
|----------------------------------------|---|
| I . 개요 .....                           | 1 |
| II . 주요 내용별 검토 .....                   | 2 |
| 1. 혼인신고세액공제 일몰기한 폐지 및 확대(정일영의원안) ..... | 2 |



## I. 개요

### 1. 정일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7755호)

####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일영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6. 3. 25.

(3) 회 부 일 : 2026. 3. 26..

####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결혼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혼인 연령이 늦어지는 등 혼인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높은 주거비, 결혼·신혼생활 초기의 경제적 부담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자녀세액공제, 출산·입양세액공제 등 가족 형성 이후를 지원하는 규정은 있으나, 혼인 자체를 장려하기 위한 세 제 지원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신고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년간 매년 100만 원의 세액을 공 제하는 ‘혼인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5조 등).

## Ⅱ. 주요 내용별 검토

### 1. 혼인신고세액공제 일몰기한 폐지 및 확대(정일영의원안)

| 현 행(「조세특례제한법」)                                                                                                                                           | 개 정 안                                                                                                                                                                                                                                 |
|----------------------------------------------------------------------------------------------------------------------------------------------------------|---------------------------------------------------------------------------------------------------------------------------------------------------------------------------------------------------------------------------------------|
| <input type="checkbox"/> 혼인세액공제<br>(※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br>○ 공제대상: <u>거주자</u><br>○ 공제금액: <u>50만원, 1회 한정</u><br>○ 적용기한: <u>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u> | <input type="checkbox"/> 혼인세액공제 일몰기한 폐지 및 확대 (제59조의6 신설)<br>○ 공제대상: <u>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u><br>○ 공제금액: <u>연간 100만원, 혼인신고일이 속한 과세연도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연도까지</u><br>○ 적용기한: <u>삭제</u><br>○ 시행일: 2027. 1. 1.<br>○ 적용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

\* 정일영의원안 2026. 3. 25. 발의(의안번호 17755)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혼인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생애 1회에 한하여 50만원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혼인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음. 동 규정은 2024년 말 세법개정을 통하여 신설된 것으로,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동 세액공제가 적용되도록 일몰기한이 설정되어 있음.

☐ 개정안은 「소득세법」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혼인신고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연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신설하려는 내용으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비해 2027년 1월 1일부터 혼인신고를 하

는 경우의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하고,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혼인신고 세액공제를 영구화하려는 것임.

□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혼인건수는 2021년 처음으로 20만건 이하로 집계되었고, 최근 그 건수가 상승하였으나 2025년 기준 24만 326건으로 여전히 2018년에 비해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음.

인구 1,000명 당 혼인건수를 의미하는 조혼인율<sup>1)</sup> 역시 혼인건수와 마찬가지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2018년 5.0건에서 2025년 4.7건으로 약 6% 감소하였음.

#### [연도별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단위: 건, 천명당 건)

| 연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혼인건수 | 257,622 | 239,159 | 213,502 | 192,507 | 191,690 | 193,657 | 222,412 | 240,326 |
| 조혼인율 | 5.0     | 4.7     | 4.2     | 3.8     | 3.7     | 3.8     | 4.4     | 4.7     |

주: 조혼인율은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를 의미함.

자료: 「인구동향조사」, 국가데이터처(국가통계포털 KOSIS)

혼인률의 하락은 저출생 추세를 심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음.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sup>2)</sup>은 2016년 1.17명 수준에서 2018년 0.98명, 2021년 0.81명, 2022년 0.78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최근 합계출산율이 반등하였으나 2025년 기준 0.80명으로 여전히 1명 미만이라는 점에서 저출생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

1) 조혼인율은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를 의미

2) 15세~49세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 [합계출산율 추이]

(단위: 명)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0.97  | 0.91  | 0.84  | 0.81  | 0.78  | 0.72  | 0.75  | 0.80  |

자료: 국가데이터처

□ 이에 개정안은 혼인과 관련한 세액공제 금액을 현행 1회에 한해 50만원에서 혼인신고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3년간 연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혼인신고세액공제를 영구화하려는 것으로, 혼인비용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혼인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국가데이터처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2년 “13세 이상 미혼의 결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남녀 모두 결혼자금의 부족을 가장 큰 요인으로 선택하였는데, 개정안에 따를 경우 혼인비용을 경감함으로써 혼인을 장려하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13세 이상 미혼의 결혼하지 않는 이유(2022년)]

(단위: %)

| 구 분                       | 전체   | 남자   | 여자   |
|---------------------------|------|------|------|
| 결혼자금(혼수 비용, 주거마련 등)이 부족해서 | 29.7 | 35.4 | 22.0 |
| 직업이 없거나 고용 상태가 불안정해서      | 11.0 | 13.4 | 7.7  |
| 결혼 생활과 일을 동시에 잘하기 어려워서    | 6.6  | 4.7  | 9.1  |
| 출산과 양육이 부담되어서             | 10.7 | 9.3  | 12.5 |
| 결혼하고 싶은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       | 11.6 | 11.3 | 11.9 |
| 결혼하기에 나이가 어리거나 많아서        | 0.8  | 1.1  | 0.6  |
| 행동과 삶의 자유를 포기할 수 없어서      | 9.6  | 8.4  | 11.2 |
| 배우자 가족과의 관계가 부담되어서        | 1.0  | 0.6  | 1.6  |
|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 18.7 | 15.2 | 23.3 |

자료: 「사회조사」, 국가데이터처(지표누리)

□ 다만, 혼인신고 세액공제 제도가 2024년에 신규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도입된 점을 고려할 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적용기한을 연장한 후 그 정책적 효과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동 특례의 확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예산정책처는 정일영의원안에 따라 혼인신고세액공제를 도입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8년 1,989억원, 2029년 3,977억원 등 2028년에서 2032년까지 5년간 총 1조 7,899억원(연평균 △3,58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세수추계 결과(2028~2032년)]

(단위: 억원)

|        | 2028   | 2029   | 2030   | 2031   | 2032   | 누적      | 연평균    |
|--------|--------|--------|--------|--------|--------|---------|--------|
| 정일영의원안 | △1,989 | △3,977 | △3,977 | △3,977 | △3,977 | △17,899 | △3,580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문 의 처

02)6788-5157